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65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문진석 · 이연희 · 손명수
이춘석 · 박수현 · 김 윤
이정문 · 이해식 · 김주영
김용만 · 박 정 · 김기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수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옥외광고물로 표시·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됨에 따라,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이 다량 배출되며 매립할 때에는 생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지 내부에 잔류하여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5조의3 신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친환경 현수막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친환경 소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3(친환경 현수막 지원) 시 · 도지사·시장등은 친환경 소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 다)를 사용하여 제작한 현수막 을 표시·설치하는 자에 대하 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